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,

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

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

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

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습니다.

○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

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

과도한 공사비 인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며,

○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
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
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
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○ 이에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에
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
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
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고
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정비지원계획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,
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
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